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265호 2020. 11. 16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고 시

- 호명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0-92호)

공 고

- 「예천군 예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0-1368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호명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고시

예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명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「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」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16일

예 천 군 수

1. 사업의 명칭 : 호명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

2. 사업의 목적

-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에 주민생활편의를 위한 문화·복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고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면 중심지의 거점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.

3. 사업의 내용

- 위 치 :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일원
- 주요 사업내용
 - 기초 생활 기 반 : 늘품복지센터 및 늘품복지광장, 늘품안전안심거리
 - 지 역 경 관 개 선 : 늘품체육공원
 - 지 역 역 량 강 화 : 교육, 컨설팅, 정보화기기, 마을경영지원 등

4. 사업효과

- 농어촌 중심지 기능의 강화를 배후 농촌지역과 긴밀히 연계시킴으로써 농촌지역의 사회, 경제, 문화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유도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

5. 사업비 : 4,000백만원 (국비 2,800 군비 1,200)

6. 사업기간 : 2019년 ~ 2022년(4개년)

7. 사업시행자 : 예천군수

8. 기타 문의사항

-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건설교통과(054-650-656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「예천군 예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예천군 예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11월 16 일

예 천 군 수

1. 개정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조치에 따라 4년제 이외 대학생에 대한 입사자격 차별요인을 개선하고, 입사 가능 학교를 수도권 소재의 학교로 확대하며 주민등록 거주 기간 완화로 많은 군민들이 예천학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

2. 주요내용

○ 입사생의 자격 완화 (안 제5조)

· 대학교(원) 소재 : 서울특별시 ⇒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)

· 대학교 4년제를 우선하고 미달할 경우 2년제 이상 선발

⇒ 4년제와 2년제 동등한 기준으로 선발

·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3년 이상 예천군 주소를 둔 자

⇒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예천군에 주소를 둔 자

3. 개정조례안

○ 붙임과 같음

4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(참조: 행정지원실장)에게 서면이나 이메일(dldbf10605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항목별 의견 : 찬·반 여부와 그 사유

나.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※ 보내실 곳 :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(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)

- 전화 : 054-650-6088, 팩스 : 054-650-6089

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

☐ 조례명 : 예천군 예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 건	비 고

예천군 예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예천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”를 “수도권 소재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) 2년제”로, “3년 이상 예천군”을 “예천군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) ① 입사생은 <u>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3년 이상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함을 원칙으로 한다.</u>	제5조(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) ① ----- <u>수도권 소재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) 2년제</u> ----- ----- ---- <u>예천군</u> ----- ----- -----.
② <u>입사생의 정원에 미달할 경우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(원)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자격은 제1항과 같다.</u>	<u><삭 제></u>
③ (생 략)	② (현행 제3항과 같음)

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】

제47조(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)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
·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.